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2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9.17. 권영숙 의원 외 5명

나. 회부일자: 2019.9.17.

다. 상정일자: 제2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9.9.2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강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어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게 운동시설을 이용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2)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3) 예산의 확보(안 제5조)

- 4)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안제6조, 제7조)
- 5)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안 제8조, 제9조)
- 6)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대장작성·관리(안 제10조, 제11조)
- 7)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안 제12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조례 제정안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장소에 따른 관리부서 외에 시설 전체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총괄부서를 따로 지정하는 등 관리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마포구 관내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음.(안 제2조)
- 또한, 설치장소,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운동기구에 안내표시를 게시하여 이용주민 누구나 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주체를 알 수 있게 하여 이용 중 불편사항 등을 신고 또는 건의할 수 있게 하였음.(안 제6조 ~제9조)
- 그 밖에 주요사항으로,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강화 및 이용주민의 피해보상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신청 등을 하도록 하여 안전한 운동기구 이용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제목개정 2015. 2. 3.〕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